

국내 민간조사업체 주요업무 조사연구

조 성 구(경운대학교 경호학부 교수)

김 태 민(경남대학교 경호비서학과 교수)

김 동 제(경운대학교 경호학부 교수)

민간조사업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제화되지 않아 인정되고 있지 않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미 민간 시큐리티 영역의 중요한 업무의 하나로서 발전되고 있는 업무이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조사업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살펴보고, 앞으로 민간조사업의 업무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조사업체의 주요업무는 경찰력 한계 사건 22(34.9%), 개인사찰 16(25.3%), 불륜현장 15(23.8%), 사람찾기 10(15.8%)으로 범주화 되었다.

둘째, 앞으로 입법화 단계에서 민간조사의 업무범위를 설정하여 본다면 공권력 한계범위 44(50.5%), 비범죄영역 21(24.1%), 수요의 범위 17(19.5%), 사생활침해 유지범위 5(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조사업체의 주요업무와 앞으로 입법화 단계에서 민간조사업체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현재의 주요업무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과 경찰관들이 생각하는 앞으로 입법화 단계에서의 업무범위는 모두 경찰력과 같은 공권력의 한계 부분에서 민간조사의 업무범위를 가늠하여 볼 수 있었다.

주제어 : 민간조사, 주요업무, 전문성 증진, 제도도입, NVivo 8.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민간조사는 국민의 치안의식 증대와 함께 다양한 치안서비스의 수요로부터 민간조사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민간조사는 법정증언자료 및 재판 관련 서비스, 수사기관과의 공조여부, 미아·가출인·실종자 처리, 사업관련 범죄, 개인정보 관련 범죄 등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민간조사업은 불법으로 그 수요에 따라 파생된 홍신소와 외국 민간조사업체, 그리고 국내 경비업체까지 번져가고 있는 실정이다(조성구·김태민, 2011: 241).

그렇지만 현재 한국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에서는 탐정이나

정보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유사민간조사업체들이 공공연하게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1996년 우리나라가 OECD회원국으로 가입 후 외국의 민간조사업체들이 국내에 들어온 바 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민간조사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살펴보고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준비하여야 할 때이다(조성구 외, 2012: 251).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입법화되지는 않았지만,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민간경비의 주요영역으로서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민간조사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되어 경찰이 개입하기 어려운 곳에서 수익자부담의 원칙하에 피의죄인의 재산과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조성구·이주락, 2011: 184-185).

외국에서 민간조사는 민간경비의 성장에 따라 그 영역이 확장되어 갔으며, 그 과정에서 민간조사 서비스는 민간경비 치안서비스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Fisher & Green, 1998; 정일석·박준석·오세광, 2008: 273 재인용). 미국을 포함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민간조사를 민간경비의 한 분야로 인식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민간조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조성구·김태민, 2011: 242-243).

그런데 이러한 논의의 핵심 중 하나가 국내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조사업의 주요업무와 업무의 전문성에 관한 것이다. 왜냐하면 최근 심부름센터를 가장한 민간조사업체의 청부살인, 미행, 도청과 같은 불법행위와 국민의 피해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시점에 도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조속한 민간조사제도의 입법화 도입하는데 있어 국내의 민간조사 시장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용어 중 ‘민간조사(업체)’는 현재의 ‘심부름센터(업체)’를 의미한다.

2. 연구질문

이 연구는 국내 민간조사 시장의 주요업무와 이에 따른 전문성 증진방안을 알아보기 위하여 현재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심부름센터의 단속업무와 민간조사업과의 업무적 연관성이 높은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인식하는 바를 분석하려 시도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근거한 연구질문(Research Questions)은 다음과 같다.

- 1) 현재 국내 민간조사 시장의 주요업무는 무엇인가 ?
- 2) (이에따른) 민간조사업의 전문성 증진방안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민간조사의 의의

민간조사란 영어의 'Private Investigation'을 번역한 용어로서 이에 대하여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손상철(2011)은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에 의한 보수를 받고 위법하지 않는 범위의 업무를 조사활동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제공하는 업무”, 정일석(2008)은 “개인이나 업체가 사적인 신분으로 타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사건을 조사하는 것”, 황정익 외(2005)는 “국가수사기관의 수사나 조사업무와 유사한 분야에서 타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개인의 자격으로 수사 또는 조사를 하는 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하면 민간조사란 민간영역에서 계약에 의해 보수를 받고 의뢰인과 관계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제공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조성구 외, 2012: 252).

2. 국내 민간조사의 주요업무

1) 심부름센터

1970년대에 들어가면서 흥신업단속법을 피하기 위해 변칙적으로 ‘심부름센터’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영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심부름업체는 순수하게 민원서류 대행이나 각종 심부름을 대행하는 업체도 있지만 과거 흥신소와 같이 수익성만 보장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뛰어 들고 있으며 심지어는 살인 범죄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한편 개인 뒷조사를 위해 불법도청,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 중 80-90%는 간통현장의 불륜관계를 밝혀내는 것이라 하며, 유형별로는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불법채권추심행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행위, 특정인의 소재를 미행, 불륜행위를 추적하는 사생활 침해행위, 사람들 간의 전화를 엿듣는 불법 도청 순으로 나타났다(정일석, 2008: 38-39).

2) 보험범죄조사업

우리나라에서 보험범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각 보험사는 보험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는데, 보험사들은 손해조사 및 손해사정업무를 철저하게 하여 범법행위를 적발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의 부작용으로 보험금의 지연지급과 보험금의 미지급에 대한 보험사에 대한 대회공신력이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험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보험사의 자구노력과 업계 공동의 노력을 촉구함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나오게 되었다(정일석, 2008: 44-45).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1996년 손해보험업계는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보험범죄 전문조

사팀인 SIU(Special Investigation Units)을 설치하기 시작하였으며 보험사들은 전직 교통경찰관과 같은 수사관을 채용하여 SIU를 별도로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3) 신용정보업

우리나라의 신용정보업은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 추진에 따라 발생한 대규모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채권추심업무를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나 다양하고 신뢰가 높은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경제주체의 신용도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이해관계자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한국은행 보도자료, 2006: 1; 정일석, 2008: 40-41).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에 의거 금융감위의 승인을 받아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신용평가업, 채권추심업의 4가지 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정일석, 2008: 41).

범죄혐의가 불투명한 실종, 미아, 가출인에 대한 수색 등 경찰이 개입할 개연성이 약한 모든 경우에 한정된 인력과 예산의 공공 치안서비스를 투입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법제도가 고도화되면서 늘어나는 법적·기술적 허점을 악용한 범죄나 법적 분쟁에 대해 국가기관이 기초 사실조사나 자료 수집을 대행해 주는 것도 불가능하다(이인기, 2008: 15). 그러므로 이러한 틈새시장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민간조사업이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4) 외국 민간조사업체

지금까지 학술연구에서 우리 민간조사현황을 소개한 것을 살펴보면 이상원(2011: 12)은 현재 우리 민간조사 현황은 외국 민간조사 업체의 국내시장 잠식으로 외국 민간조사업체들이 국내에 들어와 사건을 의뢰 받아 활동 중이며, 외국 민간조사 업체로는 크롤(Kroll), 핑커튼(Pinkerton), 힐앤어소시에이츠(H&A) 등 20여 개 정도라 하였다.

그 중 힐앤어소시에이츠(H&A)는 16개국에 400여 명의 요원을 두고 있는 민간조사업체로 2004년에 우리나라에 지사를 설립하고 민간조사 뿐만 아니라 경호, 보안 등 종합 보안 서비스(Total Security Service)로 진출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이영래(2009: 28)는 현재 우리 민간조사 현황은 줄스 크롤(Jules B. Kroll)에 의해 설립된 민간조사업체 크롤(Kroll)은 전 세계 33개국 65개 도시에 사무소를 두고 3,700-4,200여명의 직원을 운용하며 약 9,1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한국에도 지사를 두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민간조사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핑커튼(Pinkerton)은 2000년초 경영상의 문제로 우리나라에서 철수하였고 2003년 스웨덴 시큐리티업체인 시큐리타스(Securitas)로 합병되었다. 또한 크롤(Kroll)은 서울시 광화문 소재에 2005-2009년까지 지사를 내고 영업을 하였으나 이 역시 경영상의 문제로 현재는 철수한 상태이다.

앞서 설명된 민간조사업체 중 현존하는 외국계 민간조사업체는 힐앤어소시에이츠(H&A)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업체는 2004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서울시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국계 리스크 컨설팅업체가 국내에서 수익성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직 까지 민간조사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외국의 민간조사 주요업무¹⁾

1) 미국

미국에서 최초의 민간조사업체는 1850년 앨런 핼커튼(Allan Pinkerton, 1819-1884)이 시카고에서 창설한 핼커튼 내셔널 탐정사무소로 알려져 있다. 당시 민간조사제도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되어 세계적 규모로 성장하여 개인재산보호는 물론 치안에도 크게 기여하는 등 미국 민간조사 분야를 선도하였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민간조사제도가 가장 발달되어 있고 거의 모든 사건에 민간조사원이 관여될 정도로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나라이다. 미국의 소송에서는 사실문제를 제대로 알아내어 배심원에게 호소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소송의 승패는 변호사와 더불어 민간조사원이 사실관계와 증인 및 증거로 사용될 사안에 대해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보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소송에 있어서 단순히 법률적 지식으로 무장한 변호사 혼자서는 소송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민간조사원은 다른 어떤 분야의 사람들보다 중요한 협력자로 자리매김했다(강영숙·김태환, 2006: 29).

미국은 50개 주가 각각 자체적으로 민간조사 관련 법규와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기 때문에 각 주마다 다양한 민간조사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업무내용에 대한 예시는 제한적 열거가 아닌 예시적 열거인 경우가 많아 법규에 열거되지 않아도 형법 등 관련 법률에 어긋나지 않은 한 얼마든지 자유롭게 업무를 할 수 있다(정일석, 2008: 108).²⁾ 이처럼 미국에는 6만여 명 이상의 민간조사원이 활동하고 있고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와 같은 전문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에서는 자체 주 정부의 해당 면허를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정액의 책임보험에도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강영숙 외, 2009: 97).

미국의 경우 경찰제도가 분권화되어 주마다 운영방식이 다르며 민간조사원은 전문적으로 개인에 대한 대인적 허가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자격이 없는 사람은 민간조사업체의 설립도 운영도 할 수 없다(김종식, 2011: 32).

1) 외국의 민간조사 주요업무 자료는 민간조사 관련 선행연구 자료를 참고하였다.

2) Florida주의 「Chapter 493.6101, Florida Statutes」 제17조는 민간조사원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다른 주도 거의 비슷하게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다(이영래, 2009: 36).

(a) 조사권한이 있는 정부기관의 서면위임을 받은 때 미국 연방, 주 또는 지역에 대해 발생하였거나 위협이되는 범죄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b) 협회, 개인, 단체의 신원, 습관, 행동, 소재, 제휴, 유대, 거래, 평판, 성격 등에 대한 조사
(c) 증인이나 다른 사람들의 신뢰도 조사
(d) 실종자나 주인·상속인 없는 재산의 소유자, 부동산 상속자 소재 파악
(e)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재산의 소재 파악 또는 회복
(f) 화재, 명예훼손, 손실, 사고, 피해,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침해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조사
(g) 범죄수사, 심판위원회, 중재, 민사재판, 형사재판에 사용될 증거 확보와 그를 위한 준비

2) 영국

영국은 민간조사제도를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별도의 관련 법률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민간경비와 관련하여 공공범죄행위 예방 등에 대한 법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2001년 민간조사제도를 비롯해 민간경비업 전반을 포괄하는 「Private Security Industry Act 2001」을 제정하였다. 동법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민간조사제도와 관련된 규정은 2006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안동현, 2007: 15).

영국의 「Private Security Industry Act 2001」 제4조는 민간조사원의 업무에 대해 특정 인물에 대한 정보 또는 그 활동·소재에 대한 정보 및 망실·훼손된 재산의 상황 또는 그 원인에 대한 정보의 수집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감시·조회·조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개인 고객도 있지만 주된 고객은 보험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이나 변호사라고 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고객일 경우는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가 많다. 교통사고조사나 산업재해조사를 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지 않는가를 조사하고 그 증거를 수집한다. 변호사가 고객일 경우는 변호사가 담당하는 민사·형사재판의 변호자료가 되는 목격자를 찾아내거나 증거 또는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 주가 된다. 그 밖에도 유산상속을 위하여 유족·친족을 찾아내거나 도망자를 수색하는 등의 일도 많다. 개인고객의 경우는 입양된 사람의 친부모를 찾는 조사나 배우자의 부정 등에 대한 조사를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다(나영민, 2005: 16).

3) 프랑스

프랑스의 민간조사제도는 2003년 이전에는 신고제로 운영되어 누구나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행정기관에 신고만 하면 민간조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3년 「안전 확보를 위한 사적 업무에 관한 법률」이 「국내치안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민간조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개인탐정이나 법인사업자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동법 제20조는 민간조사원의 업무에 대해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자유로운 업무라 규정하고 있다(최현락, 2008: 44).

프랑스의 민간조사 업무에서는 기업대상 서비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개인대상 서비스는 감소하고 있다. 대규모 탐정회사에서는 사내 범죄 조사·신용 및 신변 조사, 보험사기 조사 등의 기업대상 조사를 특화시키는 경우가 많고, 규모가 작은 탐정사업자는 결혼·이혼·양육비 관련 조사나 소재파악 등의 업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³⁾

3) 나영민(2005: 29)은 프랑스 탐정의 업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기업대상]

- a. 사내범죄(사내도난이나 정보유출 등)에 관한 조사
- b. 신용(개인의 지불능력 등) 조사
- c. 인사·채용시(중요 보직의 채용후보자 등) 신변 조사
- d. 채무자의 소재 확인
- e. 보험사기에 관한 조사

[개인대상]

- a. 이혼에 수반하는 정보 수집
- b.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상대방의 수색
- c. 결혼 전의 신원 조사

1983년 개정법(Loi No. 83-629 de 12 juillet 1983) 제20조에서는 민간조사업의 업무를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조사활동이라 규정하고 있다. 민간조사업의 업무로는 개인대상 기업대상 서비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조사업 회사에서는 사기에 관한 조사나 재무조사 등의 기업대상의 조사를 특화 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규모가 작은 민간조사업 업체들은 의뢰인의 요구에 따른 갖가지 조사를 행하고 있지만 민간조사업체의 규모와 전문성에 따라 그 업무 내용도 다르다(김향겸, 2010: 50).

4) 일본

일본은 민간조사원에 대해 국가가 특별히 자격요건을 규정하거나 면허를 주지 않고 관찰 관청에 신고만 하면 민간조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강영숙, 2006: 339). 그러나 흥신소 및 민간조사업자들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조사, 개인정보 유출, 불법 도청 등이 만연하게 되면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게 되었고, 마침내 2006년 6월 「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探偵業の業務の適正化に關する法律」을 제정하게 되었다. 동법 제2조는 민간조사원(탐정)의 업무에 대해 면접·미행·탐문·잠복 등의 조사 방법을 통해 특정인의 소재나 행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문경환, 2009: 147).

일본 민간조사법의 특징은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는 점과 법률에 소재탐지 및 정보 수집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직접 규정하였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탐문·미행·잠복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해 실지조사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조사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사생활 침해를 통한 법적 분쟁 가능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였다. 물론 사생활 침해의 정도에 따라 개별 법규에 저촉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해결해야 하겠지만, 업무 범위에 탐문·미행·잠복 등의 구체적인 행위수단을 포함시킴으로써 이를 수권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 시행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문경환 2009: 148).

5) 독일

독일의 민간조사업무 범위는 노동법, 비즈니스, 시민법, 혼인 및 가족관련으로 나누어지는데 비교적 규모가 큰 민간조사업체는 다양한 분야에 관여하고 있으나 영세한 민간조사업체나 개인은 특정한 분야를 정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법으로는 병질환의 악용, 회계조작, 불법노동, 고용자의 무인가겸업, 경쟁회사에서 고용, 전망 있는 직원, 직원 채용 시 범죄경력이나 이전 회사의 평판 체크가 있으며, 비즈니스 관련에서는 파산사기, 보험사기, 업무비밀의 공개, 컴퓨터의 조작과 속임, 저작권과 특허권 다툼이 있다. 시민법 관련하여서는 채무자의 금융사정, 특정인의 평판, 도난당한 재산의 소재확인, 증인의 소재파악 등이 있다. 이외에도 필적의 비교, 소리의 해석, 생물학적 분석 등 전문분야에서도 업무 영역이 확충되고 있다(나영민, 2005: 33-34).

2004년 독일에서 민간조사원 활동 분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경제 범죄 관련이 55%로 가장 많았고, 고용 관련이 30%, 보험사기관련 10%, 그 외 분야가 5%로 나타나 경제와 관련된 범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 민간조사원의 의뢰받은 내용을 살펴보면 결혼이나 가족문제가 44%, 절도나 횡령과 같은 경제 범죄가 23%, 재산 상속(행방불명자 찾기)가 4%, 그 외 29%로 결혼과 관련된 사적인 부분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정일석, 2008: 155-156).

4. 선행연구 검토

민간조사 연구를 범주화해 보면 도입의 필요성, 발의된 법안의 비교, 외국의 사례와 같은 것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의 본질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1)업무범위 (2)관리감독 기관 (3)교육훈련 방향에 관한 모색으로 구체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조성구·김동제, 2013a: 72). 다음 <표 1>에서는 지금까지 민간조사업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민간조사업 관련 선행연구 정리

범주	연구자	주요내용
업무 범위	김상균 (2007)	미국, 일본 등 외국 민간조사원의 업무내용의 범위와 업무범위 설정에 따른 법률과의 관계 검토하는데 중점 두어 우리나라의 민간조사제도 모델에 대한 논의.
	안영규 (2010)	민간조사업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서는 업무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이주락·최종윤 (2012)	민간조사원 조사권의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
	최종윤·이주락·황세웅(2012)	우리나라의 입법안과 외국 사례의 비교·분석 및 전문가와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민간조사제도의 합리적인 업무범위를 제안.
관리 감독	전대양 (2006)	국회 발의 안을 분석하고 감독기관은 경찰청장이 하되 민간조사원의 관리문제는 업계의 자율을 강조하기 위해 민간조사협회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
	김원중 (2007)	국가치안을 경찰 뿐 아니라 민간조사는 국가 수사력을 보완하는 제도로서 국가 수사기관과 민간조사제도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의 관리감독 하에 제도가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
	정일석·박준석·오세광(2008)	민간조사업의 관리 감독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립하여 경찰청 소속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
	이승철 (2008)	감독기관에 대한 설정은 외국의 사례를 들어 연관성이 높은 경찰이 하여야 한다고 주장.
	정일석·박지영 (2009)	민간조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기관으로 외국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조사업의 관리감독기관으로 경찰청 산하 독립적 기구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

범주	연구자	주요내용
교육 훈련	이상원·박윤규 (2007)	민간조사원 교육이 현재의 민간경비원의 신입교육과 보수교육과 같이 현장인력 교육을 중심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
	장석현·송병호 (2008)	민간조사원 교육훈련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교수진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
	유재두 (2007)	민간조사원의 자격 조건에 대하여 논의 민간조사원의 교육으로는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전공자들에게도 일정한 시험과목의 면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
	조성구·이주락 (2011)	대학에 민간조사학과 개설의 필요성과 전망에 대하여 알아보고 민간 조사학과 졸업생의 취업현황에 대하여 분석하고 논의과정을 통하여 민간조사학과 개설을 주장.
	이주락·조성구 (2011)	경찰관들에게 민간조사의 필요성 증대 원인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들이 퇴직 후 민간조사원으로 재취업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탐색.

자료: 조성구·김동제(2013b: 186-187)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심부름센터와 같은 민간조사업체의 중요업무에 따른 전문성 증진 방안을 탐색적으로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현재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연구의 신뢰성을 위하여 현재 수도권지역 심부름센터의 단속업무 경험 및 민간 조사업무와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부서 5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하였으며, 집락무선표집법(Cluster Random Sampling)을 이용하여 57명을 표집하였다.⁴⁾

수집된 자료는 QSR NVivo 8을 이용하여 비수량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음 <표 2>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4)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공무원을 표집기준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정일석(2008)의 연구에서 민간조사업체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전국에 2,650개 정도로 추정되는 데 지역별로는 서울에 550여개, 경기도에 580여개 정도가 존재하여 수도권에 1,130여개로 수도권 지역에 50%의 비중을 차지할 만큼 밀집되어있기 때문이다(조성구, 2012: 35-36).

〈표 2〉 조사대상사의 일반적 특성

구분		사례수(N)	백분율(%)
성	남성	48	82.2
	여성	9	15.7
연령	30-39세	37	64.9
	40-49세	16	28.0
	50세이상	4	7.0
경력	5-9년	31	54.3
	10-14년	17	29.8
	15-19년	9	15.7
학력	고졸	7	12.2
	학사	42	42.1
	석사	8	14.0
직위	경장	21	36.8
	경사	14	25.5
	경위	13	22.8
	경감	9	15.7
전체		57	100.0

2. 자료의 분석

이 연구와 같이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 설계방법에 대한 합의된 구조는 없다. 그 만큼 질적 연구는 일정한 형태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연구자가 질적 연구 수행방법에 대한 감각을 갖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조홍식 외, 2011: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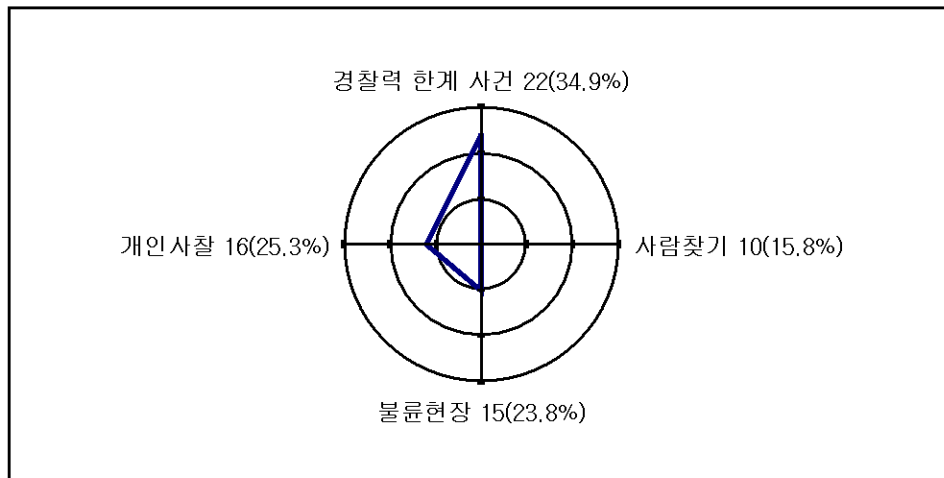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질적 연구에서 벗어나 질적자료를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수량화하였고 지금까지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은 ATLAS. ti, Hyper Research, Maxqda, The Ethnograph, NUDIST, NVivo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중 한글이 지원되는 프로그램은 NUDIST(1981), NVivo(1995) 뿐이다.

이중 이 연구에서는 최근에 개발된 NVivo 8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소프트웨어는 자료유형(미디어 텍스트, 그림, 표), 검색 및 자동코딩(줄간 검색 및 텍스트 결과 노드화), 도식방법(문서, 노드, 속성지원), 양적자료 활용(단어, 줄, 노드, 수계산, SPSS 호환)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IV. 분석결과

1. 현재 민간조사업체의 주요업무

다음 <그림 1>은 현재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조사업체의 주요업무로 코딩된 노드의 빈도로 나타낸 것이다.



민간조사업체의 주요업무는 경찰력 한계 사건 22(34.9%), 개인사찰 16(25.3%), 불륜현장 15(23.8%), 사람찾기 10(15.8%)로 범주화되었다. 다음은 민간조사업체의 주요업무중 공권력 한계 사건으로 아래 제시된 하위노드는 연구 참여자의 전체 의견중 비교적 잘 표현된 하위노드이다.

- 민간조사원이 하고 있는 일은 현재 청소년가출로 인한 가정문제 실종자 수색작업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사건의 증거조사 각종 억울한 누명을 쓴 사건에 대한 증거수집 등 공권력의 도움이 한계가 있는 사건들이 주로 이용되죠. 국가 수사기관의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 민간인이나 민간조사업체가 직접 조사할 수 있는데 이런 쪽에 민간조사업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죠.(H-18)

연구 참여자들은 민간조사업체의 주요업무로 공권력 한계의 사건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국가치안서비스의 예산 및 인력의 한계로 처리가 어려운 사건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민간조사업체에서 주요업무로 처리되고 있다고 하였다. 다음은 민간조사업체의 주요업무로 개인사찰이며 제시된 하위노드는 연구 참여자의 전체 의견중 대표적인 하위노드이다.

- 주로 개인사생활 뒷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는 해결사라는 명목으로 청부 살해 납치 협박과 같은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요즘 이렇게 보면 배우자 외도조사, 도청, 미행 또는 개인정보열람 채권추심 같은 대부분 불법적으로 남의 뒤를 캐보는 거죠.(B-13)

민간조사업체의 주요업무로 개인사찰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만 주로 남의 뒷조사를 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다음은 민간조사업체의 주요업무로 불륜현장의 증거수집 업무이며 제시된 하위노드는 연구 참여자의 전체 의견중 비교적 잘 표현된 하위노드이다.

- 주로 교통사고 의료사고 보험관련 조사나 소송에 따른 증거자료 수집하고 있고요 기업체의 산업스파이 조사나 심부름센터의 성격으로 불륜현장 확인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불륜현장 증거확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요즘 이혼이 점점 늘고 있으니 더 많아지겠죠.(V-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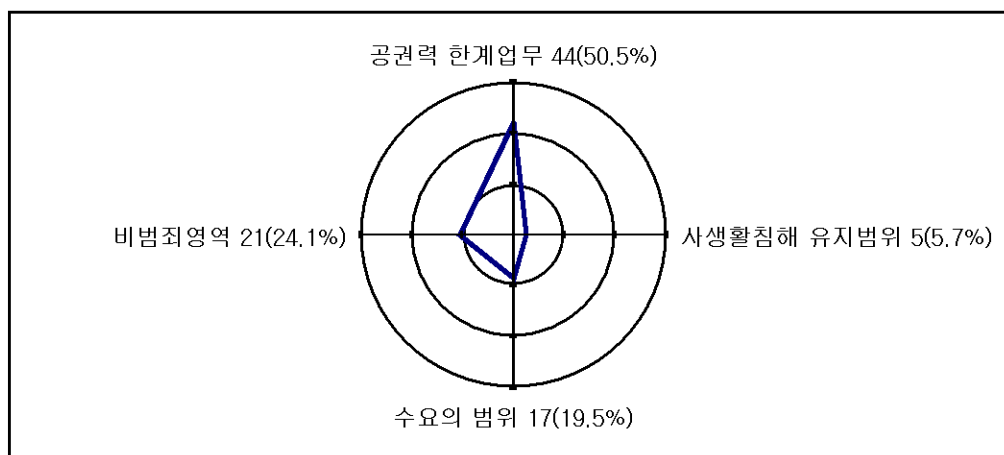
민간조사업체의 주요업무로 불륜현장의 증거확보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최근 이혼율이 급증함에 따라서 불륜현장의 증거확보를 원하는 수요자가 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다음은 민간조사업체의 주요업무로 사람 찾기 업무이며 제시된 하위노드는 연구 참여자의 전체의 견중 많은 의미를 전달하는 하위노드이다.

- 민간조사는 뭐 보험회사에서 조사하는 사람 심부름센터 이혼 소송 증거확보나 불륜관계 뒷조사 이런 건데 거의 대부분은 사람 찾기 그러니까 실종자 찾기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돈 들고 도망간 사람이나 도망간 배우자를 찾는 거도 있고 미아도 있고요.(G-21)

민간조사업체의 주요업무로 사람 찾기 업무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개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특정인을 민간조사업체에 의뢰하여 해결하려는 사람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민간조사업의 업무범위 설정

다음 <그림 2>는 민간조사의 업무범위로 코딩된 노드의 빈도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민간조사의 업무범위 설정은 공권력 한계범위 44(50.5%), 비범죄영역 21(24.1%), 수요의 범위 17(19.5%), 사생활침해 유지범위 5(5.7%)로 범주화되었다. 다음은 민간조사의 업무범위로 공권력 한계의 영역에 관한 것이고 아래 제시된 하위노드는 연구 참여자의 전체 의견중 비교적 잘 표현된 하위노드이다.

- 민간조사업자의 사건조사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하지 말고 국가기관 권한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조사하되 일정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 절차를 거쳐서 도입해야 해요. 또 불법적인 업무 처리에 있어서는 강력한 법적 수단을 강구해야겠지요.(Q-71)

- 국가기관에서 할 수 없는 간단한 조사관련 업무를 민간조사기관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사건 당사자들이 개인 사생활 노출을 꺼리는 경우나 장기간 소요되는 사건의 경우 민간조사기관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W-12)

- 현재 경찰에서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아 가출인 실종자에 대한 소재파악, 보험과 같은 의뢰인의 피해확인 및 사실조사업무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E-10)

민간조사의 업무범위로 공권력 한계의 영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민간조사의 업무 범위로 미아찾기, 가출, 보험사기와 같은 공권력의 한계에 있는 부분으로 한정하여 민간조사의 업무영역을 설정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다음은 민간조사의 업무범위로 비범죄영역에 관한 것이고 아래 제시된 하위노드는 연구 참여자의 전체 의견 중 대표적인 하위노드이다.

- 보험사기 관련 정보수집, 사실관계의 조사, 가출인 조사 미아발생조사와 사업정보관련 유출 조사로 한정하여 공익성과 비범죄성 사건으로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A-22)

- 사실관계조사 및 보험사기관련 정보수집 모조품 발견 산업정보의 유출 타지 등 공익성 업무와 비범죄성 사건으로 범위를 한정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Z-43)

- 미아찾기 실종가족 찾기 뭐 보험사기 산업정보유출과 같은 비범죄성 사건으로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C-3)

민간조사의 업무범위로 비범죄 영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민간조사의 업무범위로 범죄사건은 국가공권력인 경찰이 담당하고 비범죄 사건은 민간조사가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다음은 민간조사의 업무범위로 수요의 범위에 관한 것이고 아래 제시된 하위노드는 연구 참여자의 전체 의견중 비교적 잘 표현된 하위노드이다.

- 민간조사의 수요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부합하고 또 외국 사례를 보면 업무 범위는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광범위하게 범위를 정하자면 의뢰자 국가 기업 개인의 손해 손실 재난을 방지하고 민형사건 재판과정에서 미제사건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여야겠어요. 결국 수요범위에 따라 결정되겠죠.(N-38)

- 요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의료사고, 법과학 감정, 사이버 관련 조사 같이 요즘 수요

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업무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M-20)

민간조사의 업무범위로 수요의 범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국가 치안역량의 강화를 위해서라도 민간조사의 영역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민간조사의 업무범위는 국민의 수요의 영역에 따라서 결정되면 된다고 하였다. 다음은 민간조사의 업무범위로 사생활침해 유지범위에 관한 것이고 아래 제시된 하위노드는 연구 참여자의 전체 의견중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한 하위노드이다.

- 상당히 막연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민간조사원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프라이버시에 침해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분명히..... 그 선이 바로 민간조사업무 범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J-92)

민간조사의 업무범위로 사생활침해 유지범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민간조사로 인한 사생활 침해 사건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조사의 업무 범위를 불법적 사생활 침해의 한계선으로 정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민간조사의 주요업무는 국가 공권력의 한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고 이들 업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현재 공 경찰력의 수사, 교통, 정보, 방법과 같은 본연의 업무 과중과 이에 따른 인력, 장비, 시간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개인의 사적인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기 어려움으로 한계 사건을 민간조사에서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업무의 비용은 음성적 계약으로 인하여 확인 할 수 없었는데 이와 같은 문제점은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민간조사의 주요업무와 관련하여 정일석(2008)은 현재 민간조사업체의 업무는 80-90%가 간통현장의 불륜관계를 밝혀내는 것이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업체의 주요업무는 경찰 한계 사건 22(34.9%), 개인사찰 16(25.3%), 불륜현장 15(23.8%), 사람찾기 10(15.8%)으로 범주화 되었다. 이처럼 현재의 민간조사업은 불법적인 개인사찰이나 불륜현장의 증거확보와 같은 일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간조사의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최중윤 외(2012)는 민간조사 업무수행 과정에서 침해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와 같은 사생활 영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개인정보·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민간조사원 조사권의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민간조사의 업무 범위를 분실·도난 등과 관련된 재산의 소재 확인과 각종 사고 또는 피해의 원인과 책임 조사와 실종아동·가

출인·실종자 및 채무불이행자·재산범죄자에 대한 소재 파악 그리고 기업 내 보안·회계 범죄, 보험사기, 의료과실·사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역에서의 범죄·불법행위 조사 마지막으로 법정 등에서 사용될 증거 확보로 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의 업무범위는 공권력 한계범위 44(50.5%), 비범죄영역 21(24.1%), 수요의 범위 17(19.5%), 사생활침해 유지범위 5(5.7%)로 범주화 되었고, 앞으로 제정되어야 할 민간조사의 주요업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이 공권력의 한계에 따른 영역을 맡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강영숙. (2006). 「한국의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 강영숙·김태환. (2006). 미국의 탐정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2: 5-50.
- 강영숙·김태환·유우종·이경근. (2009). 「탐정(민간조사)학개론」. 인천: 진영사.
- 김종식. (2011). 민간조사(탐정)제도 도입에 대한 우려와 발전방향. 국회의원 이인기 공청회자료 주제발표문.
- 김향겸. (2010). 「민간조사업 도입에 관한 경찰공무원 인식조사」.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나영민. (2005). 「민간조사업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 문경환. (2009). 개정 경비업법(안)상 민간조사원의 업무 범위 및 한계 연구. 「경찰법연구」, 7(1): 129-166.
- 손상철. (2011). 민간조사제도의 규제방안과 소관부처에 관한 고찰. 「한국민간경비학회지」, 17: 131-162.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2013. 5.28, 법률 제11845호).
- 안동현. (2007). 「민간조사업과 관련기관의 바람직한 관계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 이상원. (2011).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함의. 국회의원 이인기 공청회자료 주제발표문.
- 이영래. (2009). 선진외국 민간조사제도의 시사점-국내 도입 및 선진국 운용사례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6(1): 31-52.
- 이인기. (2008). 공인탐정, 민간조사제도의 필요성 및 추진상황. 서울: 수사연구소.
- 정일석. (2008). 「민간경비 영역확장을 위한 민간조사제도 도입 방안」. 박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 정일석·박준석·오세광. (2008). 바람직한 민간조사제도 도입 방안 - 경비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지」, 10(4): 271-299.

- 조성구·김동제. (2013a). 민간조사 교육의 중요성, 현황과 방향. 「한국위기관리논집」, 9(8): 67-86.
- 조성구·김동제. (2013b). 민간조사제도 도입 지연과 그 방향. 「한국경찰학회보」, 41: 181-201.
- 조성구·김태민. (2012). 민간조사업의 도입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경찰학회보」, 33: 241-267.
- 조성구·이주락. (2011). 민간조사학과 개설의 필요성과 성장방향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8: 181-205.
- 조성구·이주락·김동제. (2012). 민간조사업체의 증가 원인과 문제점.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1(3): 247-270.
- 조흥식·정선욱·김진숙·권지성. (2011).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서울: 학지사.
- 최종윤·이주락·황세웅. (2012). 민간조사제도의 도입과 업무범위 설정. 「한국경찰연구」, 11(1): 225-244.
- 최현락. (2008). 「민간조사업의 도입모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한국은행 보도자료(2006년 3월 10일)
- 황정익·김윤철·백창현. (2005). 「공인조사(공인탐정)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서울: 치안정책연구소.
- Fisher, Robert J. and Green, Gion. (1998), *Introduction to Security*. Boston: Butterworth-Heinemann.